

#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주차장)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주차장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4. 7. 1.

인천광역시 중구청장



## 1. 결정 취지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(도시계획시설: 주차장)을 결정(신설)하는 사항임.

## 2. 위 치

-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24-31번지 일원

## 3.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

-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결정 조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1	주차장	중구 도원동 24-31번지 일원	-	438.5	438.5		

-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결정 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결 정 내 용	결 정 사 유
1	주차장	· 주차장 결정 (면적: 증438.5㎡)	· 도원동 구도심 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불법 주·정차로 인한 민원 등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## 4. 지형도면: 게재 생략(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)

- 토지이음(<http://eum.go.kr>)에서 열람 가능